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10.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1, 8702, 8703, 8704
통보국	중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024)	230,518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5
불임 1. 신에너지 생산기업 신청서	6
2. 신에너지자동차 연차보고서	9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
 * 통보일 : 2024.09.05, CNH/2115(의견제시 마감일 2025.11.04.)

- (규제요지) 동 규제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이 중국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규정 및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방법을 규정

TBT 통보번호	▪ CHN/2115	통보일 고시일	▪ 2025.09.05.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규정 ▪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ew Energy Vehicle Production Enterprises and Product Access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People's Republic of CHINA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건강 및 안전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초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결정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1.04.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결정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자동차 ▪ New energy vehicles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주행거리 확장형 포함), ▪ 순수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230,518	HS Code	▪ 8701,8702,8703,8704

□ (제정 개요) 신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이라 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여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제정 내용을 적용함

- ①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정의 명확화
- ② 신에너지 생산기업 신청 시 제조업체의 주요 요구사항 및 제출자료 안내
- ③ 산업정보화부 법정 처리 절차 등

[표 1] 제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3조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자동차’란, 신형 동력시스템을 채택하고 신형 에너지를 전부 또는 주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 ·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행거리 확장형 포함), 순수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등이 포함
제5조 신에너지 생산기업 신청시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정 및 자동차 산업 발전정책과 거시 조정정책의 요구에 부합할 것 (2) 신청인은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인허를 이미 취득한 자동차 생산기업일 것, 또는 국가의 관련 투자관리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 절차를 완료한 신설 자동차 생산기업일 것 (3)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능력, 제품 생산 일관성 보장능력, 애프터 서비스 및 제품 안전보장능력을 갖출 것 (4) 동일한 종류의 통상 자동차 생산기업 진입관리 규칙에 부합할 것
제6조 신에너지 신청시 예외조항	자동차 생산기업이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의 완성차 또는 차대를 기초로 개조하여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개조가 차대, 차량 탑재 에너지시스템, 구동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제7조 신에너지 자동차제품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할 것 (2) 「도로 자동차 제품의 진입 심사요구사항」의 해당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전용 검사항목 및 적용 표준, 동일한 종류의 통상 자동차제품 관련 표준에 부합할 것 (3) 국가가 인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할 것 (4) 산업정보화부가 정한 안전기술조건에 부합할 것
제8조 /제9조 신에너지 생산기업 제출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심사 신청서 (2)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신청서」(별지 1 참조) 및 관련 증빙자료 (3) 신설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의 경우,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및 국가의 관련 투자관리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 절차를 이행한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외 합자기업은 또한 중외 주주의 지분비율 증명서를 제출 필수

구분	내용
	<p>(4)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주요 기술 매개 변수표 (「도로 자동차 제품 진입 심사 요구사항」을 참조할 것)</p> <p>(5) 검사기관이 발급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검사보고서</p> <p>(6)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p>
제10조/ 제11조 산업정보화부 법정 처리절차	<p>(1) 산업정보화부는 진입 신청 접수 후,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일괄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해야함</p> <p>(2)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한 날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것</p> <p>(3) 20 근무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정보화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0 근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p> <p>(4) 제3의 기술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가를 조직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진입 신청에 대하여 기술심사를 실시</p>
제12조 심사면제 요구사항	<p>동일한 종류의 통상 자동차 생산기업 진입관리 규칙에 따라 이미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진입 심사요구사항중 관련 요구사항의 심사를 면제</p>
제 15조 ~ 18조 신에너지생산 기업의 요구사항	<p>(1)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출고합격증을 규범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출고합격증 및 그 기재사항이 실제 제품과 유일하게 대응하고 항상 일치되도록 해야함</p> <p>(2)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애프터서비스 이행 약정 제도를 수립하여야 함</p> <p>(3)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운행 안전상태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하며,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이미 판매된 모든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운행 안전상태를 모니터링해야하며, 기업의 모니터링 플랫폼은 지방 및 국가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되어야 함</p> <p>(4)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그 종업원은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운행 안전상태 정보를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위조·훼손하거나,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함</p> <p>(5)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 동안 각 신에너지자동차 제품별로 대장을 작성하여, 자동차의 사용·정비·수리 상황을 추적/기록 및 신에너지자동차 동력배터리에 대한 추적 정보관리를 실시하고, 동력배터리의 회수·이용 상황을 추적·기록하여야 함</p> <p>(6)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기술상태, 고장 및 주요 문제 등 운행 상황에 대하여 분석·정리하고, 연차 보고서(부속서 2 참조)를 작성해야 함 - 연차 보고서는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전 생애주기 동안 보관</p>

구분	내용
제19조 변경시 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진입을 신청하는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종류나 동력시스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기,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다)이 「공고」에 등재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과 다른 경우, 또는 생산 주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8조에서 열거한 자료를 산업정보화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제품의 진입을 획득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이 동일한 종류의 순수전기자동차 제품 진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 심사만을 실시
제20조/21조 지속운영시 주요 관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진입 심사 요구사항」 및 생산 일관성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안전보장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함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에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정보화부 및 관계 성·자치구·직할시의 산업정보화 주관 부문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제22조 ~ 29조 산업정보화부 처리절차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의 「진입 심사 요구사항」 이행 현황, 생산 일관성 현황 및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현황 등을 감독·점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심사, 현장 확인, 시장 추출검사 및 성능 시험 등이 포함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정보화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의 생산 현황 및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 현황을 감독·점검하여야 함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진입 심사 요구사항」에 열거된 사항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생산관리상 중대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거나, 제품이 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행위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산업정보화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24개월 이상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기업에 대하여 산업정보화부는 특별 공시를 해야함 산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기업이 생산 일관성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신청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신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킬 것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진입 심사 요구사항」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공안전·신체 건강·생명·재산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산업정보화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생산·판매 활동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즉시 시정하도록 명할 것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산업정보화부는 해당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의 진입을 취소·말소하여야 함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또는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진입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업정보화부는 이를 접수하거나 진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진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기,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또는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진입을 취득한 경우, 산업정보화부는 그 진입을 취소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3년 이내에 다시 진입을 신청할 수 없음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산업정보화부 「공고」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에너지자동차 차종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한 경우, 산업정보화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함

관련 법령 및 표준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국무원의 행정심사 비준사항 중 보존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 GB/T 3730.1-2001 자동차와 트레일러 유형의 용어와 정의
-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구사항
-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전용 검사항목 및 적용 표준
- 도로 자동차 제품 진입 심사요구사항

불임 1**신에너지 생산기업 진입 신청서 서식****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신청서**

신청기업명(인) :

연락처:

우편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E-mail: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 요령

1. 이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정확할 것
2. 이 신청서는 먹색 필기구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글씨는 명확할 것
3. 이 신청서의 모든 기재 항목(표 포함)의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페이지 첨부 가능

기업 성명

1. 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산업정보화부에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을 신청
2. 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산업정보화부의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정」과 관련 문서의 규정을 준수함
3. 본 기업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현장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것을 자발적으로 확약하며, 심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
4. 본 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안교통관리 등 관계 부서가 수행하는 신에너지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조사에 협조할 것

신청기업 법정대표자(서명 · 날인) :

신청기업(인) :

작성일자: 년 월 일

I. 기업 기본사항

기업명(인)			
등기주소			
생산주소			
법정대표자			
제품상표		기업 「공고」 일련번호	
신에너지자동차생산능력 (대/년, 근무형태를 단일조·이중조·삼중조로 명확히기재)			
자동차 및 부품 제품 관련 자산 현황 (단위: 만위안)			
자본금			
고정자산원가		고정자산현재가	
총자산 (토지가격제외)		순자산 (토지가격제외)	

1. 신청 기업 소개 및 제품 개요

기업 인원, 생산능력, 자산 관계, 기업 연혁,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신에너지자동차 제품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 성과, 국가 연구과제 참여 현황, 성실·준법 경영 상황 및 관련 증명자료 등을 포함

2. 신청 기업의 투자주체 기본 상황

투자주체 개요, 자본금 규모, 자금조달 능력, 수익창출 능력, 성실·준법 경영 상황 및 관련 증명자료 등을 포함

3.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기술적 특성 설명

기술 출처, 동력시스템, 차체 및 샐시 구조, 주요 제원 및 사양 등을 포함

4.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생산공정, 생산조건 및 능력, 생산주소, 제품 추적성 체계 설명

차체/운전실, 차대, 샐시, 완성차 등을 포함하며, 자가 생산한 전자·전기 시스템 부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함

제품 추적성 체계는 엔진, 차량 에너지 시스템/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 시스템, 구동 모터, 차량 제어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

5.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판매 및 운행 상황(해당되는 경우)

6. 애프터서비스 이행 약정

애프터서비스 약정에는 제품 품질보증 약정,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애프터서비스 인력 및 제품 사용자에 대한 교육, 애프터서비스 항목 및 내용, 부품 제공 및 품질보증 기간, 애프터서비스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피드백, 부품(예: 배터리) 회수, 손해배상 처리, 그리고 제품의 품질·안전·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조치 등이 포함될 것

7. 제품 안전보장 메커니즘 설명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플랫폼 개요,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항목, 데이터 전송 주기, 기업 모니터링 플랫폼과 지방 및 국가 모니터링 플랫폼 간의 연계 현황, 비상대응계획, 긴급구조·구난 방안, 사고 조사 및 보고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 비상처리 제도 구축 현황

II. 주요 생산·검사 장비(시설) 목록

번호	명칭	모델	수량	용도	장비원가 (만위안)	비고
주: 장비원가는 해당구매 세금계산서(구매영수증)와 일치해야 함						

(2) 주요 검사용 기기·설비

번호	명칭	모델	수량	주요기술적 매개변수	검정일자 또는유효 기간	설비원가 (만위안)	비고
주: 주요 기술적지표에는 기기·설비의 측정범위, 정도(정밀도)등이 포함된다.							

블임 2 신에너지자동차 연차보고서

신에너지자동차 연례보고서(20XX년도)

(기업명)

작성일자: ○년 ○월 ○일

기업 성명

법정대표인(서명·날인):

기업명(직인):

년 월 일

개 요

1. 신에너지제품 개선 현황
2. 생산 및 검사능력과 조건 구축 현황
3.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판매의 총괄 현황
4. 국가 관련 정책 및 강제성 표준·법규의 이행 현황
5.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의 신청·수령 현황
6. 생산 일관성 내부 점검 현황

제품 일관성 자체 점검 현황, 생산 일관성 보증 능력 자체 점검 현황 포함

7. 정부 관련 부처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감독·점검 현황
8.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분석 현황

모니터링 대상 신에너지자동차 수량, 제품의 차종·지역별 분포 현황, 차량별 운행거리, 단일 차종 생산량 및 총 운행거리, 전체 제품 생산량 및 총 운행거리, 에너지소비 데이터 및 분석, 고장 및 사고 현황 통계·분석 등 포함

9. 애프터 서비스 및 제품 안전보장 현황
10. 제품의 안전·환경보호·에너지절약 관련 사건 또는 사고와 그 처리·보고 현황
11. 동력 배터리(슈퍼커패시터 등 포함) 회수 및 처분 현황

II.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판매량 및 매출액

번호	모델명	제품명	생산지 주소	생산·판매량(대) 및 매출액(만위안)				합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1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							
2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							
3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							
합계				총생산량							
				총판매량							
				총매출액							

III. 신에너지자동차 동력용 배터리(슈퍼커패시터, 연료전지 스택 포함) 구매 현황

번호	모델명	제품명	생산지주소		동력용배터리구매량(대) 및 구매액(만위안)				합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1					조달량							
					조달액							
2					조달량							
					조달액							
3					조달량							
					조달액							
합계					총조달량							
합계					총조달액							